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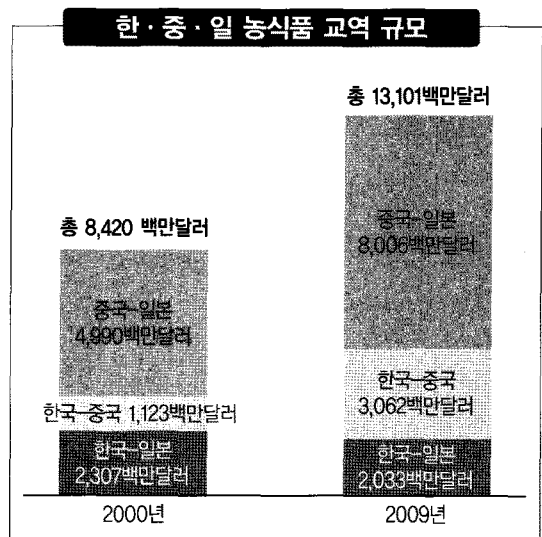
# 농식품 안전성의 사전적 확보 식품안전협력 모색해야



한·중·일간 식품안전관련 협력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식품안전협력조약의 실효성 확보, 협력 사업 다양화와 국가별 맞춤형 상호협력 수요 발굴, 수입국 현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황 윤 재\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에는 높은 경제·사회적 의존도, 지리적 근접성, 농산물 생산 구조 및 식생활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농식품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고 있다. 최근 한·중·일 3국 간 농식품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중·일 간 농식품교역은 1999년 8,420 백만달러에서 2009년 13,101백만달러로 약 1.6 배 증가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의 중국과의 상호교역 규모가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농식품 교역은 1999년 대비 2009년에 약 2.7배, 일본과 중국 간 농식품 교역은 약 1.6배가 증가했다.



교역 규모 증가와 함께 한·중·일 간 교역 농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

하여 수입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도 높은 실정이다. 특히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산 농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유제품의 멜라민 검출, 어패류 납 검출 등과 같이 부적절한 위해물질의 의도적인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전체 수입식품 중에서 중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 비율이 각각 33%(2009년), 23%(2008년)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안전체계 이해, 협력관계 구축

식품안전사고는 경제적인 파급이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단순히 수출국에만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산 김치에서의 기생충알 검출 사건의 경우 중국내 한국산 김치의 기생충알 검출로 사건이 확산되면서 양국간 외교 마찰을 야기하고, 한국산 김치 해외 수출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식품안전사고는 사후의 신속한 대처 뿐만 아니라 사전적 대응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기존에 한·중·일 간 농식품 안전 관련 협력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주로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전반적인 농식품 안전성 확보에

는 한계가 있었다. 한·중·일 간 농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3국간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 중국, 일본은 여러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는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이다. 그러나 한국이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농수축산식품의 위험관리와 위험평가 등을 취급단계별, 품목별로 분담하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 일본은 위험관리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품목별, 취급단계별로 분담하고, 위험평가는 식품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중국의 경우에도 식품안전 업무와 관련한 최고 의사협조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식품안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식품안전관련 업무의 총괄·조정과 식품안전기준설정은 위생부가 담당하며, 위험관리는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취급단계별로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 등이 업무를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다.

### 국제적 기준의 인증 이루어져야

한국, 일본, 중국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GAP, HACCP, 원산지 표시제도는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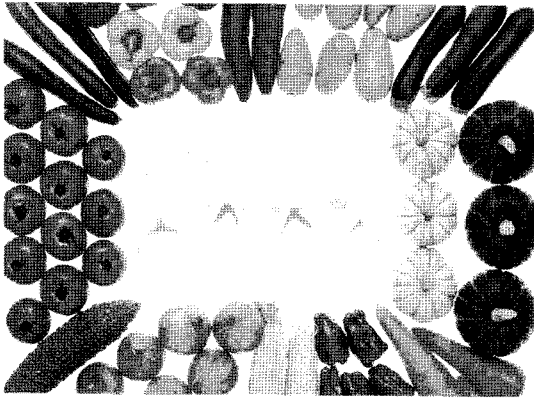
한 제도의 운영 취지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국내 제품의 대외 경쟁력 제고, 높은 품질의 제품 보호 등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세부내용과 시행 체계 등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가령 GAP의 경우 한국은 GAP를 전품목을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하여 일본, 중국에 비해 대상품목이 광범위하다. 그러나 일본은 국내용과 수출용, 중국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서 GAP를 운영하고 있고, 각각 수출용과 1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 동등성(Global GAP)을 인정받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단일한 인증체계를 유지하여 국제적인 동등성은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 GAP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비해서 비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성격이 강하다.

HACCP의 경우에는 한국, 일본은 농림수산식품부(일본은 농림수산성), 보건복지부(후생노동성)로 이원화되어 HACCP에 관여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HACCP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 중국이 국가 주도로 HACCP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등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 중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는 제도의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과 함께 배추김치, 쌀 등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표시 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AP, 유기인증, HACCP 등 주요 농식품 안전관리제도는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 교역에서의 안전성 보증과 한·중·일 간 농식품 안전과 관련한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각국간 농식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간 한국, 중국, 일본 간에는 주로 식품안전사고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조약 체결, 관련 회의 개최, 교육 프로그램 등 인적 교류 프로그램 등 상시적인 형태의 협력이 일부 있었지만 주로 2000년대 이후 이루어졌다. ‘한·중·일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각서’가 2009년에 체결되었고, 이밖에 관련 조약 체결, 협의체 및 인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대부분의 사항도 2000년대 이후 이루어져서 아직 한·중·일 상시적 협력은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약 등의 경우 식품안전과 관련한 관련국간 협력관계를 선언하는데 그



**식품안전관련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교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협력 관련 채널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치고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향후 국가간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협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가간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 발생시에 관련국가간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고 식품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식품안전관련 제도의 동등성 확보

한·중·일 간 농식품 안전 상호협력은 ① 농식품 안전성의 사전적 확보, ② 실질적인 식품안전협력 모색, ③ 국제 교역 질서와의 조화라는 기본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하에서 한·중·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국가간 제도 조화, ② 협력관련 체계 정비, ③ 협력사업 활성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중·일의 국가간 제도 조화는 식품안전 관련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식품 안전관련 위해물질 잔류기준의 국가간 불일치, 주요 식품안전관련 제도의 동등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각국의 위해물질 잔류기준에 대한 공동 논의는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식품안전관련 제도의 동등성 확보는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식품안전관련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교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협력 관련 채널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 채널 정비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민·관 협력채널 구축, 관련국가간 식품안전 관련 실무급 교류의 활성화는 단기 방안으로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중·일간 식품안전관련 협력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① 식품안전협력조약의 실효성 확보, ② 협력 사업 다양화와 국가별 맞춤형 상호협력 수요 발굴, ③ 수입국 현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협력 사업 활성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추진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식품안전협력조약의 실효성 확보, 수입국 현지 지원체계 마련 등의 경우 국가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㉞